

2009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안내

1.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써, 사회연대 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간에 평등하게 조정함은 물론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주의 공동 각출금 성격의 부담금을 말합니다.

- ※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 헌법재판소 판례(헌재 2003.07.24. 2001헌바96, 판례15-2, 58-93)

2.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적용대상 사업주

① 고용의무사업주의 연도별 의무고용률

- 장애인고용부담금 연도별 적용기준

기준(적용)연도		2009년	2010년	2012년	2014년	
신고연도		2010년	2011년	2013년	2015년	
고용부담금 의무고용률	민간사업주	2%	2.3%	2.5%	2.7%	
	국가·지방 자치단체	고용계획 부담금	3%	3%	3%	3%
		적용예외	2.3%	2.5%	2.7%	
	공공기관	2%	3%	3%	3%	

- ※ 관련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 ※ 공공기관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민간 사업주와 기준 동일)

② 적용대상 사업주

상시 100명 이상 사업주가 신고·납부하여야 할 사항은?

-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 (신고·납부) 의무고용률(2009년-2%)에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매년도 첫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다만,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임금지급의 기초일수

- ▶ “상시근로자” 라 함은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다만, 중증장애인은 예외)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전단
- ▶ “임금지급의 기초일수”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법 기준 또는 소정근로일수와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유급휴일, 휴가일을 포함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16일 이상은(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매월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후단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은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장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 고용부담금을 신고해야하는 사업주는

- 법인 사업체의 경우 법인단위로 신고하여야 하며, 법인 소속의 모든 사업장을 취합하여 법인의 본점 소재지(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법인(서울 중구 소재), ○○고등학교(전남 광주 소재), △△중학교(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 중구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학교법인이 학교법인, ○○고등학교, △△중학교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일반사업체의 경우 소속 지정, 공장, 영업소, 지사 등 모든 사업체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사업체의 대표자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적용대상 연도별 변화추이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200~299명	100~199명	100명 미만
적용시기	1991년~	2006년~	2007년~	부담금 면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

특정월의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이면 무조건 부담금 신고·납부대상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 96명(업종별 적용제외율 0%)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시근로자	1,160	80	80	80	80	90	90	90	90	120	120	120	120
적용대상근로자	1,160	80	80	80	80	90	90	90	90	120	120	120	120
의무고용인원	16	1	1	1	1	1	1	1	1	2	2	2	2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 1,160명/12월 = 96명
- 고용의무인원 : 16명(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림)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96명으로 부담금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에는 100명 이상인 해당 월(9월, 10월, 11월, 12월)도 부담금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용제외인원 및 고용의무인원 산정은 해당 산식에 따라 나온 수치에서 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림

특정월의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도 부담금 산정시 해당월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 월평균 상시 115명인 사업주(업종별 적용제외율 10%)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시근로자	1,380	120	120	120	130	130	130	90	90	120	120	120	120
적용대상근로자	1,242	108	108	108	117	117	117	81	81	108	108	108	108
의무고용인원	22	2	2	2	2	2	2	1	1	2	2	2	2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 1,380명/12월 = 115명
- 고용의무인원 : 22명(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림)

※ 부담금 신고대상은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

-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에 미달하는 해당 월(7월, 8월)도 부담금납부 대상월로 산정함

고용주체별 (민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민간 사업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2009년-2%)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부담금 신고·납부대상 사업주로 적용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0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 의무고용률(공무원 아닌 근로자 총수의 2.3%)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민간사업주와 동일하게 고용부담금 신고·납부대상 사업주로 적용하되, 견습 중인 공무원,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공무원(실무수습 포함),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고용부담금을 산정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 노동부령에 따라 제외되는 범위의 사람

- 법 제79조제3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
 2.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상담, 알선 등의 업무

□ (공공기관) 2010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제외)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의 3%(의무고용률)를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

○ 다만, 의무고용률 조정(2% → 3%)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시행일부터 3년간 2분의 1을 감면하여 적용합니다.

※ 부칙 <제9791호,2009.10.9> 제4조

☞ 「2010년 공공기관 지정」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붙임 명단참조)

③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 월평균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부과특례 적용대상 사업주의 적용시기

200~299명 2006년부터 부담금 대상 사업주로 적용(2007년부터 납부)

100~199명 2007년부터 부담금 대상 사업주로 적용(2008년부터 납부)

100명미만 부담금 대상 사업주로 적용되지 않음

※ 부칙 제7154호 제2항(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1. 상시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2. 상시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 적용산정 Tip

◇ 부과특례는 상시 300명 미만 사업주가 최초로 적용되는 연도부터 5년간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 법에서 상시 100명(200명)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 시점부터 5년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 ☞ 2007년 부과특례를 적용받는 상시 2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
 - ⇒ 2007년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 258명 : 부과특례적용
 - ⇒ 2008년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 325명 : 부과특례 미적용
 - ⇒ 2009년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 285명 : 부과특례적용

3. 장애인고용부담금 연도별 부담기초액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적용기준
 - “부담기초액”이란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고용정책심의회(구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 2009년 1월 1일부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은 1인당 월 510천원입니다.
 - 다만, 장애인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인원(그 수에 1명 미만의 끝수가 있을 경우 그 끝수는 버림)에 대해서는 월 부담기초액에 1인당 월 255천원을 가산합니다.
 - ※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고시」(노동부 고시 제2008-85호)
 - 또한,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총액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 1인당 월 255천원을 곱한 금액을 감액합니다.
 - ※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고시」(노동부 고시 제2008-85호)
- 연도별 부담기초액 및 건설업 공사실적액

연도	부담기초액	공사실적액	비고
2008	500,000원 (고용률 1/2 미만 250,000원 가산)	6,139백만원	50명 고용기준
2009	510,000원 (고용률 1/2 미만 255,000원 가산)	7,084백만원	50명 고용기준
2010	530,000원 (고용률 1/2 미만 265,000원 가산)	6,203백만원	50명 고용기준

- ※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며,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공사실적액으로 산정할 경우 공사실적액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예) 4대 사회보험자료, 세무서 원천징수자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자료, 결산재무제표, 일용노무비명세서, 일용급여대장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도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 [연간공사실적액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공사실적액 × 50] < 1명미만 끝수는 버림 >

4. 업종별 적용제외율

-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직종에 대하여는 제외하는 업종과 비율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업종별 제외율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명	연도별 적용제외율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02	임업	45%	35%	25%	15%	5%
B	어업	75%	65%	55%	45%	35%
101	식탁광업	65%	55%	45%	35%	25%
11	금속광업	55%	45%	35%	25%	15%
12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20%	10%	-	-	-
22121	신문발행업	20%	10%	-	-	-
2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5%	-	-	-	-
24	화학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5%	-	-	-	-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	-	-	-	-
2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	-	-	-
271	1차 철강산업	30%	20%	10%	-	-
272	1차 비철금속산업	15%	5%	-	-	-
273	금속주조업	15%	5%	-	-	-
28	조립금속 제품제조업	-	-	-	-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	-	-	-	-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5%	-	-	-	-
35	기타운송장비제조업(선박건조업 <3511>은 제외)	5%	-	-	-	-
3511	선박건조업	40%	30%	20%	10%	-
401	전기업	15%	5%	-	-	-
402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5%	-	-	-	-
F	건설업	45%	35%	25%	15%	5%
H	숙박 및 음식점업	20%	10%	-	-	-
601	철도운송업	50%	40%	30%	20%	10%
602	육상여객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6021>은 제외)	65%	55%	45%	35%	25%
60211	도시철도운송업	50%	40%	30%	20%	10%
603	도로화물운송업	40%	30%	20%	10%	-
61	수상운송업	45%	35%	25%	15%	5%
62	항공운송업	50%	40%	30%	20%	10%
63	여객항공선, 항공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화물취급업<631> 및 항공업<632>은 제외)	10%	-	-	-	-
631	화물취급업	25%	15%	-	-	-
632	항공업	15%	5%	-	-	-
64	통신업	20%	10%	-	-	-
74491	축량업	25%	15%	-	-	-
7591	경비 및 탐정업	30%	20%	10%	-	-
O	교육서비스업	50%	40%	30%	20%	10%
851	의료업	40%	30%	20%	10%	-
852	수의업	40%	30%	20%	10%	-
872	방송업	20%	10%	-	-	-
881	뉴스제공업	20%	10%	-	-	-
883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0%	-	-	-	-

- ※ 단, 동 제도는 '05.5.31. 법이 개정·폐지되었으나 법 부칙 특례조항에 따라 '06년부터 매년 10%씩 축소 적용하여 2010년까지 적용하고 2011년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법 부칙<제1563호, 2005. 5. 31> 제2장(부담금부과에서 의무고용율의 적용제외율에 관한 특례) 참조

5. 고용부담금 납부액 산정

□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계산식

부담금 = 【《월별 미달고용인원 × 부담기초액》의 연간합계액】 + 《월별 가산인원 × 부담기초 가산액》 - 《중증장애인가면액》】 - 《부과특례(50%)감면액》 - 《연계고용감면액》 - 《장려금연간합계액》

월별 고용의무인원 = 【월별 상시근로자수 - (월별 상시근로자 수 × 업종별 제외율)】 × 2/100 <1명 미만 끝수는 버림>

월별 미달고용인원 = 월별 고용의무인원 - 월별 장애인근로자수

□ 산정예시

① 2009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업종별 적용제외율 20%)

월별	상시근로자수 A	적용제외근로자수 B = A × 20%	적용대상근로자수 C = A - B	고용의무인원 D = C × 2 / 100	고용장애인수 E			미달인원 D - E
					계	중증	경증	
1월	483	96=483×20%	387=483-96	7=387×2%	1	-	1	6

※ 상시근로자수 및 장애인근로자수가 매월 동일한 것으로 가정

☞ 부담금납부인원(미달고용인원) : 6명

(고용의무인원 1/2에 미달하는 가산인원 2명)

☞ 2009년 1월 부담금액 = (6명×51만원)+(2명×255천원) = 357만원

⇒ 고용의무인원 1/2에 미달하는 인원 = [의무인원(7명)×50%]3.5명, 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림]-고용인원(1) = 2명

② 2009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200~299명(업종별 적용제외율 10%)

월별	상시근로자수 A	적용제외근로자수 B = A × 10%	적용대상근로자수 C = A - B	고용의무인원 D = C × 2 / 100	고용장애인수 E			미달인원 D - E
					계	중증	경증	
1월	213	21=213×10%	192=213-21	3=192×2%	1	-	1	2

※ 상시근로자수 및 장애인근로자수가 매월 동일한 것으로 가정

☞ 부담금납부인원(미달고용인원) : 2명

(고용의무인원 1/2에 미달하는 가산인원 0명)

☞ 2009년 1월 부담금액 = (2명×51만원) + (0명×255천원) = 102만원

▶ 위 ②번 예시와 같이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200~299명인 경우 최종 계산된 부담금에서 50%를 감면합니다.

※ 300명 미만의 경우 100~199명(2011년까지 감면), 200~299명(2010년까지 감면)

- 매월 부담금이 동일한 경우 총 부담금액 1,224만원(102만원×12개월)에서 부과특례(50%감면)하여 612만원 납부

③ 2009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213명, 업종별 제외율 0%

월별	상시근로자수	적용제외근로자수	적용대상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려금지급기준인원	장애인근로자수					미달고용인원	가산인원	중증감면인원
						전체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1월	185	-	185	3.7→3	3.7→4	1	1	-	-	-	2	-	-
2월	220	-	220	4.4→4	4.4→5	2	1	-	1	-	2	-	1
3월	220	-	220	4.4→4	4.4→5	1	1	-	-	-	3	1	-
4월	230	-	230	4.6→4	4.6→5	4	2	1	1	-	-	-	-
5월	230	-	230	4.6→4	4.6→5	3	1	1	1	-	1	-	1
6월	230	-	230	4.6→4	4.6→5	3	1	-	2	-	1	-	2
7월	190	-	190	3.8→3	3.8→4	5	2	1	2	-	-	-	-
8월	190	-	190	3.8→3	3.8→4	4	2	1	1	-	-	-	-
9월	210	-	210	4.2→4	4.2→5	3	2	-	-	1	1	-	1
10월	215	-	215	4.3→4	4.3→5	2	2	-	-	-	2	-	-
11월	220	-	220	4.4→4	4.4→5	1	1	-	-	-	3	1	-
12월	220	-	220	4.4→4	4.4→5	0	0	-	-	-	4	2	-
합계	2,560	-	2,560	45	57	29	16	4	8	1	19	4	5

☞ 부담금 납부액

【 ① - ② - ③ = 9,435,000원 - 4,717,500원 - 375,000원 = 4,342,500원 】

① [미달고용인원×부담기초액(원)] + 부담기초액가산 - 중증감면액
= (19명 × 510,000원) + (4명 × 255,000원) - (5명 × 255,000원)
= 9,690,000원 + 1,020,000원 - 1,275,000원 = 9,435,000원

※ 중증장애인가면의 경우에는 부담금이 발생한 월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에 대해 부담금 총액(10,710,000원)의 1/2범위 내에서 감면합니다.

② 부과특례액 (50% 감면) = 9,435,000원 × 50% = 4,717,500원

※ 부과특례는 장려금과 상계하기 전 부담금에 대해 적용합니다.

③ 장려금연간합계액 = 7월 중증남성 1명에 대해 장려금 375,000원 발생

4] 2009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308명, 업종별 제외율 20%
장애인근로자는 모두 중증장애인

월별	상시근로자수 (공사금액) A	적용제외 근로자수 B=AX20%	적용대상 근로자수 C=A-B	장애인고용 의무인원 D=CX2%	장애인 근로자수 E	미달 고용인원 F=D-E	가산인원 G=(D-X)X2% E	중증 감액인원
계	3,703	736	2,967	52	25	27	8	9
1월	296	59.2→59	237	4.7→4	4	-	-	-
2월	328	65.6→65	263	5.2→5	3	2	-	3
3월	291	58.2→58	233	4.6→4	4	-	-	-
4월	307	61.4→61	246	4.9→4	2	2	-	2
5월	286	57.2→57	229	4.5→4	2	2	-	2
6월	239	47.8→47	192	3.8→3	-	3	1	-
7월	354	70.8→70	284	5.6→5	-	5	2	-
8월	393	78.6→78	315	6.3→6	1	5	2	1
9월	316	63.2→63	253	5.1→5	1	4	1	1
10월	295	59.0→59	236	4.7→4	-	4	2	-
11월	297	59.4→59	238	4.7→4	4	-	-	-
12월	301	60.2→60	241	4.8→4	4	-	-	-

☞ 2009.1~12월은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308명(3,703÷12월)으로 장애인고용 부담금 신고·납부대상임

☞ 부담금액은

- 미달고용인원(27명)×510,000원 = 13,770,000원 (A)
- 부담기초액 가산인원(8명)×255,000원 = 2,040,000원 (B)
- 중증장애인 감액인원(9명)×255,000원 = 2,295,000원 (C)

⇒ (A) + (B) - (C) = 13,515,000원

※ 단, 중증장애인 감액은 부담금총액(A+B=15,810,000원)의 2분의 1이내의 범위인 7,905,000원 이내에서 감액가능(감액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은 부담금이 발생한 월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에 한함)

■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2010년 적용 2011년 신고분부터)

1.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2배수 인정[다만, 소정근로시간(월 60시간)미만인 중증장애인은 1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
2. 부담금 산정 시 중증장애인 감면제도는 폐지

6. 고용부담금 신고·납부절차 등

1] 자진신고 및 납부기간

☐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시기 및 제출방법

- 2009년 기준(적용연도)연도분 부담금을 2010년 첫날부터 90일(2010.3.31)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60일 이내 신고할 유형 : *인수 및 흡수합병, 폐업 등의 사유

☐ 장애인고용부담금 자진신고

-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장애인고용 부담금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제출서류 등 요약정리

제출서류	1.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서 1부 2. 장애인근로자명부 사본 1부 3.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중증장애인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최초 보고 이후에는 동 서류의 제출 생략) 4.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신고서를 함께 제출) 또는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제출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사업체 본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신고·납부	○ 신고 및 납부기한 : 2010. 1. 1~2010. 3. 31. -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한국은행(지점) 또는 시중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출방법	○ 장애인고용포털 워크투게더(www.worktogether.or.kr)를 통한 전자신고 - 신고방법 : [회원가입(Login)]-[전자신고관리]-[부담금신고]-[전자신고하기] ○ 우편 등 Off-line 신고 -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서」 서식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2 전자신고

□ 전자신고 절차

※ 전자신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고용부담금→부담금신고납부안내→서식다운로드』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관할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납부절차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

-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4기(3,5,7,9월)로 분할하여 납부하시거나 또는 일시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할 부담금을 납부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 일시납부 사례

부담금액(A)	전액일시납부 공제액(B) B=A×3%	실 납부액(C) C=A-B
4,250,000원	127,500원	4,122,500원

-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부담금의 분할 납부대상은 해당 연도의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균등분할방법 : 부담금액을 균등하게 4기분으로 나누되, 나눈 금액이 1,00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할 경우 2기~4기의 1,000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제1기분에 포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균등분할납부의 사례

제1기분 (90일 이내)	제2기분(5.31)	제3기분(7.31)	제4기분 (9.30)
1,064,000원	1,062,000원	1,062,000원	1,062,000원

- 사업주가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연간 4기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되, 제1기분은 그 연도의 첫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기분은 5월 31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9월 30일까지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 부담금은 납부기한 내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전자납부시 유의사항

- 전자납부고지서(영수증서)를 수령한 사업체는 은행을 직접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지로)을 통해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부담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연도 첫날부터 90일 이내 **최초 자진신고·납부하는 부담금(2,3,4기분제외)은 전자납부번호가 형성되지 않아 은행방문 및 카드수납을 통해서만 납부가능 합니다.**
 ※ 전자납부를 원하실 경우 해당 관할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자께서 전자납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참여금융기관에 거래계좌가 있고, 거래계좌에 대한 전자금융 이용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으로 부담금 납부가 완료된 이후에는 정정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니 납부 전 해당고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납부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때에는 해당 은행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유의사항

- 납부할 부담금(10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전액 일시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3% 공제금액은 해당 카드사의 수수료로 계산되며, 납부사업주는 해당 3% 공제금액이 미 적용됨.
 ※ 일시납부는 해당 카드사 지점방문 및 유선전화만 가능(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는 불가함)
- 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분할하여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및 지점방문, 유선전화 모두가능(카드사에 따라 최장 9개월간 유이자 할부 가능)
- 부담금 신고기간(연도 첫날부터 90일) 중 해당 신고금액 외에는 카드수납을 할 수 없습니다(정산 및 적용누락조사에 의한 추징금 등은 납부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명	대표전화	홈페이지 주소
	1544-7000, 1544-8800	http://www.shinhancard.com
롯데카드	02-5050-1301	http://www.lottecard.co.kr
현대카드	02-2167-6588,7353	http://corp.hyundaicard.com
삼성카드	1588-8700, 02-2172-8509	http://www.samsungcard.co.kr
	02-3475-8324, 8084, 8396, 8445	http://corp.bccard.com

7.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 작성

□ 고용부담금 신고서 작성요령

- 부담금 신고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따른 부담금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공단 고용포털(www.worktogether.or.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서식 다운로드 방법
 - ①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② 장애인의무고용제도 → ③ 부담금 신고납부안내 → ④서식 다운로드 → ⑤부담금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 양식
 - 부담금 신고서 제출 시에는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사업주가 장소 및 업종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사업장이 2개인 경우, 신고서는 총 3장을 작성하여야 함)
 - 사업의 종류는 업종별 적용제외율과 관계되는 중요사항이므로 세세분류의 명칭 및 해당업종 코드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 ① 장애인근로자 명부 1부
 - 장애인 근로자 명부는 첨부서식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 ②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 국가유공 상이등급 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사본 (장애인정일자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 최초 신청·신고 이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③ 중증장애인을 임용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장애인증명서 등)
 - ※ 최초 신청·신고 이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④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신고서를 함께 제출) 또는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8. 장애인고용장려금

-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를 뺀 수에 아래의 월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 다만, 법 제33조에 따라 낼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 장애인고용장려금 이란

- 2010년부터 월별 상시근로자의 2.7%(1명미만 끝수 올림)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
- ※ 2010년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3.0%를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지급함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동 장려금은 적용예외
-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구 분	월 지급단가(단위:원)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기초 지급단가(고용율 30% 이내)	300,000	375,000	375,000	450,000
초과 지급단가(고용율 30% 초과)	400,000	500,000	500,000	600,000

※ 지급단가와 월평균 최저임금의 75%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

※ 이종지급제한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9. 직업재활시설 등 부담금 감면제도

-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을 제공하고

2009년기준 고용부담금은 2010.3.31(수)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생산관리 및 판매를 전담하거나,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연계고용 및 부담금감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②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를 참고하시거나, 우리 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문의사항 및 유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

【 문의사항 】

☞ 신고·납부관련 일반적인 문의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참조
공단 홈페이지 메인 > 팝업zone 2010년 부담금 신고·납부안내 > 질문과 답변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 기간 동안은 징수담당자와의 통화가 어려움으로 위 질문과 답변란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시 유의사항

【 유의사항 】

1. 의무고용률(2009년-2%)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2009년도 부담금을 2010년도 첫날부터 90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의거 직권으로 조사·징수하게 되며, 이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으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의 종류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어 부담금 납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차액에 대하여 추징하게 되며, 이 경우 또한 가산금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법 제35조 가산금(부담금의 100분의 10)